

[집합투자계약 변경대비표]

가. 대상 펀드 : 교보약사 Tomorrow 장기우량 증권투자신탁 K-1호(채권)

나. 정정사유 :

- Class Ae 수익증권 신설
- Class S 및 Class S-P 판매보수 인하
- Class A, Class A-i 가입조건 정의 명확화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

다. 정정 내용 :

구분	정정전	정정후
제3조(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및 종 류)	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 <u>Class A 수익증권 : 최초 납입금액이 3 억원 이상인 경우</u> 2. ~ 7.(생략) 8. <u>Class A-i 수익증권</u> 가. <u>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</u> 나. <u>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 원 이상 매입한 법인</u> 9. ~ 13. (생략) <u><신설></u>	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(현행과 동일) 1. <u>Class A 수익증권 : 최초 납입금액이 3 억원 이상인 경우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 구되는 수익증권</u> 2. ~ 7. (현행과 동일) 8. <u>Class A-i 수익증권 : 아래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선취판매수수 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 가. <u>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</u> 나. <u>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 원 이상 매입한 법인</u> 9. ~ 13. (현행과 동일) 14. <u>Class Ae 수익증권 :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을 통하여 가 입한 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는 수익증권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① (생략) 1. ~ 13. (생략) <u><신설></u>	① (현행과 동일) 1. ~ 13. (현행과 동일) 14. <u>Class Ae 수익증권</u>
제39조(보수)	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~11. (생략) 12. <u>Class S 수익증권</u> 가. (생략)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2</u> 다. ~ 라 (생략)	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(현행과 동일) 1.~11. (현행과 동일) 12. <u>Class S 수익증권</u> 가. (생략) 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0</u> 다. ~ 라 (생략)

	<p>13. <u>Class S-P 수익증권</u> 가. (생략)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0</u> 다. ~ 라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13. <u>Class S-P 수익증권</u> 가. (생략)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8</u> 다. ~ 라 (생략) 14. <u>Class Ae 수익증권</u> 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1.0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75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095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</u></p>
제40조(판매수수료)	<p>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③~⑥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동일) ② (현행과 동일) 1. ~ 3. (현행과 동일) 4. <u>Class A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15 이내로 한다.</u> ③~⑥ (현행과 동일)</p>
제 49 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	<p>② 생략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~⑤ (생략)</p>	<p>① 현행과 같음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<u>투자신탁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</u>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~⑤ (현행과 동일)</p>
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⑦ ~⑥ (생략)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	<p>⑦ ~⑥ (현행과 동일)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,</u>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(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</p>

	⑧~⑫ 생략	에 따라야 한다. ⑧ ~⑫ 현행과 같음
부칙	신설	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변경 대비 표]

가. 정정(변경)대상 : 투자설명서

- 교보약사 Tomorrow 장기우량 증권투자신탁 K-1호(채권)

나. 정정(변경)사유 :

- Class Ae 수익증권 신설
- Class S 및 Class S-P 판매보수 인하
- Class A, Class A-i 가입조건 정의 명확화
- 결산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

다. 주요 변경 내용 :

구분	정정전	정정후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. 투자신탁의 개요	<신 설>	Class Ae : BH529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<신 설>	Class Ae : BH529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 설>	2016.9.9 Class Ae 수익증권 신설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	작성기준일로 갱신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, “나. 종류형 구조”	Class A-i -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- 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<신 설>	- Class A-i :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·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· 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Class Ae :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을 통하여 가입한 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교보약사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표준편차	교보약사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표준편차
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1.54%)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5등급(낮은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</p>	<p>1.23%)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5등급(낮은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</p>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	<p>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-i -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- 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<신 설></p>	<p>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- Class A-i :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·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· 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- Class Ae :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을 통하여 가입한 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p>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”</p>	<p><신 설></p>	<p>Ae :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을 통하여 가입한 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선취판매수수료 : 납입금액의 0.15%이내</p>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”</p>	<p>Class S 판매회사보수 : 0.12 Class S-P 판매회사보수 : 0.10 <신 설></p>	<p>Class S 판매회사보수 : 0.10 Class S-P 판매회사보수 : 0.08 Class Ae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0.10 - 판매회사보수 : 0.10 - 신탁업자보수 : 0.0095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0.1 - 총보수·비용 : 0.2195 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 별 예시 : Class Ae 신설</p>
<p>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	<p>법령 개정내용으로 업데이트</p>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에 관한 사항		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[변경 대비 표]

가. 정정(변경)대상 : 간이투자설명서

- 교보약사 Tomorrow 장기우량 증권투자신탁 K-1호(채권)

나. 정정(변경)사유 :

- Class Ae 수익증권 신설
- Class S 및 Class S-P 판매보수 인하
- 결산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

다. 주요 변경 내용 :

구분	정정전	정정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Class S 판매회사보수 : 0.12 Class S-P 판매회사보수 : 0.10 <신 설>	Class S 판매회사보수 : 0.10 Class S-P 판매회사보수 : 0.08 Class Ae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0.10 - 판매회사보수 : 0.10 - 신탁업자보수 : 0.0095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0.1 - 총보수·비용 : 0.2195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.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로 갱신